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적용대상에 국군통수권자 및 반란죄 등을 범한
내국인·외국인 추가〉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97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소병훈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5. 1. 14.
3. 회부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4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군조직법」 제6조도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도 “이 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

위”를 반란죄로서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반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군통수권자와 반란 또는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대상자) ①·② (생략)	제1조(적용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 ----- -----.
<u><신설></u>	<u>1. 국군통수권자</u>
<u>1. ~ 3. (생략)</u>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 ----- -----.
<u><신설></u>	<u>1. 제5조 및 제6조의 죄</u>
<u>1. ~ 13. (생략)</u>	<u>2. ~ 14. (현행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조¹⁾는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의 죄²⁾ 또는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의 죄³⁾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
- 1)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3)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제1호⁴⁾는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통수권자와 반란 또는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의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게 됨.

□ 그러나, 헌법 제27조제2항⁵⁾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5)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반란죄의 적용대상에 내국인·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군형법상 적용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국가 안위를 보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군형법상 반란죄의 본질은 일사분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반항 또는 항거를 본질로 하므로 일반 국민이 정범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